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75
------------	------

2020.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0. 9. 9. 황인구 의원 발의 (2020. 10. 26. 회부)

### 2. 제안이유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2.3.)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3.)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 변경(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sup>1)</sup>의 심의사항(제14조)과 심의위원 구성 요건(제15조) 중 「학교보건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2.3일자로 「교육환경 보호에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33조, 제53조 (세부 규정은 붙임 참조)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 제정됨 따라 해당 법령과 용어를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음.

현 행	개정사항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원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 위원회

- 참고로,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그 간 「학교보건법」에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부분이 「교육환경법」 2)으로 이관·이원화 됨으로써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법 제정 후 3년여 기간 동안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과<sup>3)</sup>, 「교육환경법」 시행일(2017.2.4.) 이후 시통합 심의위원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대상 안건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조문정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 2) **제정이유**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3) 이번 회기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포함되어 있음.(의안번호 1874, 2020.9.9. 황인구 의원 외 14명 발의)

## 【붙임】 관련 규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5., 2014. 1. 14.>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2015. 8. 28., 2017. 10.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6.>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